

서 면 답 변 서

질문 의원명	김정량 의원	질문일시	2007. 3. 9
답 변 부 서	교통행정과		
질문주요내용	<p>우리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면질문 합니다.</p> <p>1. 관내 설치(운영)현황? 2. 대상지 선정시 우선순위 책정 근거는 무엇인지? 3.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현황은? 4.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 확충계획은?</p>		
<p>1. 관내 설치(운영)현황?</p> <p>○ 32개소 1,007면 설치 운영(2007. 3. 15현재) : 현황 별첨</p> <p>2. 대상지 선정시 우선순위 책정 근거는 무엇인지?</p> <p>○ 주차장법제10조제1항제3호,동법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부산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교통소통, 주민편의, 주차장 설치적합성, 경찰협의결과에 따라 설치</p> <p>3.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현황은?</p> <p>○ 2006년 사용료수입 324,972,490원 위탁수수료 지급 223,339,710원</p> <p>4.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 확충계획은?</p> <p>○ 설치시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설득 ○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마련 추진 ○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부산시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계속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금년도 6개소 210면 목표)</p>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현황설치

(2007. 3. 15현재)

연번	동별	주차장명	설치일자	주차면수	관리주체		비고
					관리단체	관리기간	
합계				1007			
1	괴정1동	한신아파트 앞	'05.7.1	19	새마을협의회	'06.7.1 ~ '07.6.30	
2		사하초등학교 앞	'05.7.1	28			
3		큰샘길 주변	'06.7.1	34	통우회	'07'1.1 ~ '07.12.31	
4	괴정2동	한나모자원 ~ 새마을금고	'05.7.1	22	통우회	'06.7.1 ~ '07.6.30	
5		방법순찰대 ~ 승학초교 후문	'05.7.1	29			
6	괴정3동	양지마을 ~ 산양주택	'05.7.1	37	통우회	'06.7.1 ~ '07.6.30	
7		구 경찰기동대 옆	'05.7.1	27	새마을협의회	'06.7.1 ~ '07.6.30	
8		뉴코아아울렛 ~ 동원맨션	'07.1.1	23	새마을부녀회	'07.1.1 ~ '07.12.31	
9	괴정4동	사하중 ~ 성림아파트	'00.12.26	21	통우회	'06.7.26 ~ '07.7.25	
10		사하중 ~ 미광맨션	'03.11.25	25	새마을부녀회	'06.11.25 ~ '07.11.24	
11		당리양수장 ~ 성림맨션	'05.7.1	23		'06.7.1 ~ '07.6.30	
12		푸른솔유치원 ~ 성민교회	'05.7.1	20	통우회	'06.7.1 ~ '07.6.30	
13	당리동	낙동초등학교 뒤	'01.8.1	18	통우회	'06.3.1 ~ '07.2.28	
14		당리중학교 뒤	'05.7.1	30		'06.7.1 ~ '07.6.30	
15		마하골6길주차장	'07.1.1	24		'07.1.1 ~ '07.12.31	
16	하단1동	하남어린이집 앞	'05.7.1	27	방위협의회	'06.7.1 ~ '07.6.30	
17		하단어린이집 ~ 남도궁궐APT	'06.7.1	42	통우회	'06.7.1 ~ '07.6.30	
18		하단지구대 ~ 동남배관상사	'06.7.1	28	바르게살기	'06.7.1 ~ '07.6.30	
19		강변교 ~ 하단교	'06.7.1	37	통우회	'06.7.1 ~ '07.6.30	
20		대진아파트 뒷길	'06.7.1	48	방위협의회	'06.7.1 ~ '07.6.30	
21	하단2동	청구아파트 ~ 동아대학교	'00.6.8	39	통우회	'06.6.8 ~ '07.6.7	
22		서부산자동차학원 ~ 칠산APT	'05.7.1	26	새마을부녀회	'06.7.1 ~ '07.6.30	
23		서부산자동차학원 ~ 동백APT	'05.7.1	30	통우회	'06.7.1 ~ '07.6.30	
24		남영아파트 1동 ~ 한성주택	'05.7.1	21			
25		남영아파트 7동 ~ 하단중학교	'05.7.1	51	새마을협의회	'06.7.1 ~ '07.6.30	
26	신평1동	신평1동사무소 주변	'06.7.1	28	통우회	'06.7.1 ~ '07.6.30	
27	신평2동	신평레포츠공원 ~ 기계조합	'05.7.1	30	바르게살기	'06.7.1 ~ '07.6.30	
28	장림2동	장림우체국 ~ 장림롯데리아	'05.7.1	61	새마을협의회	'06.7.1 ~ '07.6.30	
29		대동맨션 ~ 장림농협	'05.7.1	42	새마을부녀회	'06.7.1 ~ '07.6.30	
30	다대2동	다대4지구육교입구 ~ 다해APT	'05.7.1	64	새마을협의회	'06.7.1 ~ '07.6.30	
31	감천2동	옥너맨션 옆	'05.7.1	30	통우회	'06.7.1 ~ '07.6.30	
32		옥너봉산복도로	'07.1.1	23	청년회	'07.1.1 ~ '07.12.31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근거 및 설치기준

법령	내 용	
주차장법	<p>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①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p> <p>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p>	
주차장법 시행규칙	<p>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1999.3.12> 5. 종단구배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단구배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로교통법」 제32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p>②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3.12></p>	

부산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②주거지전용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허가하고 남은 경우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에게도 주차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으로 한다.<개정 2004. 1. 29, 2006. 4. 12>
 ③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06. 4. 12>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조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주거지전용주
차제운영지침
운영기본지침

제3조(주차장의 설치)①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2미터 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설치한다.
 2. 사각 또는 직각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너비2.3미터, 길이5미터이상으로 한다.
 ②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③주차장은 식별이 가능토록 노면에 관리번호를 표시하고, 안내가 필요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시행지역 진입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역"을 노면에 표시하여 주민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1. 안내표시판 내용 :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동사무소·구청·견인업체 전화번호, 기타 주차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출입구나 가게 앞 또는 지하주택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에 접하여 설치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수 없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⑤구청장(군수)은 주택가 유희공지 등의 주차장이나, 공공건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